

제20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5.3.5.)

조례안 검토 보고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 화 기]

목 차

1	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안 -----	1
2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8
3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11
4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	15

[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안]
[검토 보고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5. 2. 23.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5. 2. 24.

2. 제정이유

- 공유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최대한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토론하며, 거창군만의 독창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가. 용어의 뜻(안 제2조)
 - 공유(共有), 공유단체, 공유기업, 3대 사회적 의제
- 나. 공유 촉진 정책(안 제5조)
 - 공유영역 발굴·지원, 공유 단체·기업 육성·지원, 3대 사회적의제 추진
- 다. 공유촉진지원센터 설치(안 제8조)
 - 공유촉진 지원계획 수립, 공유단체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공유촉진 프로그램 개발, 공유활동 전문인력 양성·지원 등
- 라. 공유단체·기업의 지정(안 제10조)

마. 보조금 등 지원(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 지정 전 단체 및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 공유단체기업에 대하여 공유촉진위원회 심의 후 보조금 지원 등

바. 공유촉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4조 ~ 제1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15년 150백만원 예산확보

다. 합 의: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1) 예고기간: '15. 1. 20. ~ '15. 2. 09.

2)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의견반영함(제15조제3항단서)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민관협치 기관·단체 공유 기능 활성화와 인재풀 등 자신이 소유한 재화를 타인과 공유·소비하는 공유경제가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정책의 추진, 직무관련분야는 물론, 다양한 분야의 공유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2조에서** ‘공유’, ‘공유단체’, ‘공유기업’, ‘3대 사회적 의제’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 **안 제3조(군수책무)에서는** 군수는 군 및 출자·출연한 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민과 기업의 민간 자원이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규정을
- **안 제8조에서** 공유촉진 지원에 관한 사업과 지원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거창군 공유촉진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하여
-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 공유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15명 이내로 공유촉진위원회 설치·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공간, 물건, 정보 등의 공유를 통해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공유영역 발굴·실천과 공유단체 및 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창군 공유촉진 제정 조례안은 타당 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 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 차. (생략)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 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 거.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 마.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 나.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삭제 <2013.7.16.>

공유활동 지원계획 및 모범사례

① 공유활동 지원

□ 제도적·재정적 지원

- 공유 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업, 단체, 개인
- 공유활동에 필요한 실비적 경비 등 재정 지원

□ 공간 및 정보 제공·공유

- 대상시설: 회의실, 야외공간 등 공공시설
- 정보제공: 공유관련 정보제공 및 참여유도

② 군민 참여확산

□ 공유촉진 위원회 구성 - 조례 제정 이후 / 15명 내외

□ 인재풀, 협치 지원

- 인재풀 모집 및 등록 : 2014. 11월 ~ 2015. 2월

⇒ 6개분야 (교육·홍보 / 사회·의식 / 경제·농업 / 교육·체육 / 환경·도시 / 재능공유)

- 민관협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2014. 11 ~ 2015. 2
 - 3대 사회적 의제 실천 자질 함양 (교육, 토론, 연구 등)
 - 지역의 공동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및 주도적 실천
 - 봉사 및 재능공유, 각종 정책 및 토론회 주도적 참여
 -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위원회, 자문단, 협의회 참여기회 제공

③ 공유사례 발굴·보급

- 물품공유
 - 바자회, 교복, 도서, 학용품, 조경수목 기부
 - 아이 옷, 장난감, 어린이 용품, 아립천사, 푸드뱅크, 농기계
- 공간공유: 회의실·야외 예식장 등 시설개방, 공유 자원 개방
- 재능기부
 -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 아립천사, 생활체육 나누미
 - 귀농인 사과·딸기 재배기술 교육 지원, 재능기부활동, 자원봉사

④ 향후 발전과제

구 분		재 능 분 야
지역 개발	마을발전	마을계획 컨설팅, 주민역량 교육, 마을축제·체험기획, 전통문화보존,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주거개선	주택수리, 농어업기계정비·가전제품수리, 농기계 기술교육
	마을홍보	마을조경·벽화그리기, 문패·우체통, 마을 스토리텔링
의료 복지 교육	의료	의료검진 및 진료, 검안, 구강진료, 한방진료, 수지침·이혈
	보건	응급처치, 물리치료, 소독·방역, 식품·영양관리, 위생교육
	노인·장애우	차량지원, 수화통역, 어르신·장애인 돌봄, 장수사진 촬영
	아동보육	아동 돌봄, 구연동화·독서교육, 미술심리치료, 예체능교육
	다문화 교육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체험, 한국요리강좌, 가족·자녀교육상담
	이미용·건강	이미용, 메이크업, 마사지, 레저스포츠·건강교실, 웃음치료
문화 예술	문화예술	공연, 공예·공작, 취미교실, 청소년 거리공연
	청소년	진로·진학·청소년상담, 방과후 활동·방학캠프, 논술지도

구 분		재 능 분 야
농업	재배/생산	원예·과수·임산 노하우 공유, 친환경·유기농법 공유
경영 마케팅	판매·홍보	전자상거래, 유통·생협, 포장디자인·로고제작, 광고
	금융·보험	재테크상담, 예·적금관리, 부동산·보험상담
	법률·자문	법인설립, 생활법률상담, 상표·특허출원, 창업상담·지원
기타	문화유산 전수	농기구, 우마차, 짚 생활도구(떡석, 망태, 짚신), 지게, 목탁
	전통음식	종가음식, 종가술, 전통 발효식품 등

⑤ 공유도시 서울의 주요사례

- 서울시 보유자원의 공개와 개방: 216개 회의실, 강당 개방
- 정보소통 광장: 행정정보, 공공데이터, 회의자료 공개
- 수해 커뮤니티 맵핑: 시민 참여로 수해방지
- 우선추진 사업

구 분	과 제 명
물 건	1. 쉽게 빌려 쓰는 카 셰어링 2. 공유서가 프로젝트 3. 공구 도서관 4. 아이웃 나누기 5. 의료장비 공유 6. 사무기기 공유
공 간	7. 스마트 주차장 공유 8. 한지붕 세대공감 프로젝트 9. 체험관광 연계 도시민박 활성화 10. 시민이 채우는 열린공간 프로젝트 11. 사회복지시설 복합 커뮤니티 공간화 12. 공유를 통한 청년 주거문제 해소
민간재능	13. 휴먼 도서관 14. 서울 매세나 매칭지원 프로젝트 15. 함께 만드는 특별한 결혼식
시간(품)	16. S-JOP 공동채용 프로젝트 17. 어린이집, 복지시설 통합차량 공동구매
정 보	18. 공공 와이파이 서울 프로젝트 19. 서울 사진은행 20. QR 코드속 서울 이야기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5. 2. 23.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5. 2. 24.

2. 제정이유

- 행정리 명칭을 지역특성 및 역사적 전통,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주상면 내오리의 행정리명을 변경함(안 별표 2)
 - 오산 ⇒ 오무
- 나. 웅양면 한기리의 행정리명을 변경함(안 별표 2)
 - 장지 ⇒ 진마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1) 예고기간: '15. 1. 19. ~ '15. 2. 08.
 - 2)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행정리 명칭을 지역특성과 주민의견 등을 고려,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 본, 개정조례안의 체계상 문제점 등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제3조 (이장의 정수·행정리의 명칭)

이장의 정수와 행정리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

읍 면 명	리 명 칭	정 수	행정리의 명칭
계		267	(개정1995.12.09. 제1378호, 2014.5.28. 제2193호)
주 상 면	도 평 리	2	도평, 상도평 (개정 2006. 8. 14. 제1806호)
	연 교 리	2	임실, 연교 (개정 2006. 8. 14. 제1806호)
	내 오 리	2	<u>오산</u> , 오류동 (개정 2006. 8. 14. 제1806호)
	완 대 리	3	완수대, 도동, 넘터 (개정 2006. 8. 14. 제1806호)
	성 기 리	3	원성기, 정동, 송희 (개정 2006. 8. 14. 제1806호)
	거 기 리	3	거기, 장포, 고대 (개정 2006. 8. 14. 제1806호)
	남 산 리	3	원남산, 포덕동, 보광(개정 2006. 8. 14. 제1806호)
	응 양 면	동 호 리	2
죽 립 리		4	운평, 누룩재, 죽림(개정 2007. 8. 1. 제1846호), 구암 (개정 1995. 12. 9. 제1378호)
노 현 리		3	노현, 원촌, 화동
산 포 리		6	산포, 석정, 우량, 강천, 금광, 어인
군 암 리		3	용전, 군암, 송산
신 촌 리		4	아주, 신촌, 왕암, <u>장지</u>
한 기 리		2	오산, 한기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5. 2. 23
- 나. 제출자: 표주숙 의원 외 6인
- 다. 회부일자: 2015. 2. 24

2. 제정이유

-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 되도록 제도적 기반·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 운영 등 (안 제13조)
- 가. 위원회의 설치 등 (안 제16조)
 - 여성친화도시 추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를 둠
- 나. 위원회의 구성 (안 제18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
- 다. 위원의 임기 (안 제20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라. 위원회의 회의 (안 제22조)

-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아. 실비변상 등 (안 제24조)

-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과 일비 등을 지급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나. 예산 조치: 2015년 추경예산 확보

다. 합 의: 기획감사실과 주민생활지원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2) 규제심사: 해당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5. 2. 23 ~ 3. 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없음(제외대상)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외대상)

(5) 성별영향분석: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거창군이 2014년 12월 1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 및 여성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5조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 **안 제6조와 제9조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의 설정 내용과 여성친화도시조성 도시공간계획에 관련된 사업 추진 대상 기본영역을
- **안 제13조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 **안 제17조와 제19조에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여성 친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개발의 제도적 기반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제정 조례안은 타당 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여성발전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財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 거창군 포상조례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거창군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

제3조(수당)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북부권역(주상,용양,고제)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사업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5. 2. 23.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5. 2. 24.

2 제안이유

- 가. 제206회 거창군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2014.12.18.)에서 북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부지 매입이 가결되어 부지매입을 추진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매도의사 철회로 주상면 도평리 461-3 외 3필지로 매입 부지 변경

3 취득재산의 표시

□ 당 초

(단위 : m²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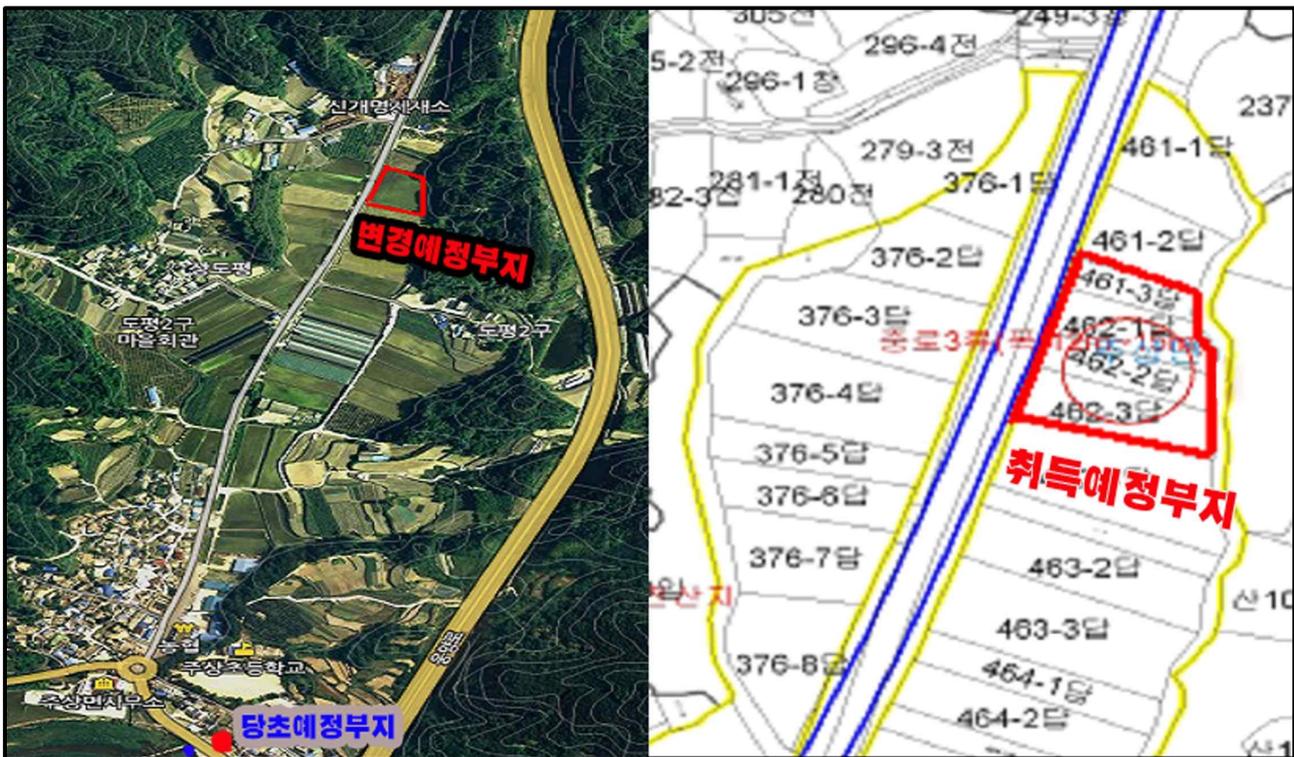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재 산 소유자
		소 재 지	지목	면 적				
계				1,983	21,415			
취득	토지	주상면 도평리 755	답	1,202	12,981	2015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부지 매입	백재인
		주상면 도평리 754-1	답	781	8,434			백인찬

▣ 변경

(단위 : m²/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재산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계				3,208	38,496			
취득	토지	주상면 도평리 461-3	답	463	5,556	2015	농가계엄대사업소 신설부지 매입	신용옥
		주상면 도평리 462-1	답	869	10,428			
		주상면 도평리 462-2	답	746	8,952			
		주상면 도평리 462-3	답	1,130	13,560			

▣ 위성도 및 전경사진



4 관련법규와 조례

-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나.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5 검토의견

- 가. 북부권역(주상, 웅양, 고제)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을 위해 토지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토지소유자 2인중 1인이 매도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 나.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시 당초계획 면적과 기준가격이 증가 (내역 아래표)되며, 사업비의 변경도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됨
 - 증감 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면 적(m ²)	1,983	3,208	1,225
기준가격(천원)	21,415	38,496	17,081

- 다. 한편,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시 당초 예정지에 비해 이용하는 농업인들의 안전성 확보에 크게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며, 토지 소유자의 매도 의사 철회라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은 타당함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6.]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2.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0.2.4.]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는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3. 법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재산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는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이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에 따라 거창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행정재산·일반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행정재산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3.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또는 무상대부(호신설 2014.10.01)
5.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
4. 행정재산으로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의 변경·폐지
5.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및 무상대부(호신설 2014.10.01)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용도폐지된 재산을 출자, 양여 및 무상귀속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재산관리관이 이에 대한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